외국인 입국·체류

01 여권의 유효기간 및 사증 체류기간 확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별도의 사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다. 여권 및 사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해두어야만 체류기간 연장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여권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입국 비자(사증) 읽기

체류자격: 한국에 입국한 목적을 알 수 있다(결혼이민자: 체류자격 F-6).

입국심사확인증 안에 있는 일자는 한국에 입국한 날이다. 입국한 다음 날부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계산된다.

체류기간은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다르며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입국일로 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신청과 체류기간 연장등을 신청해야 한다(체류 자격, 신청인의 연장 사유 등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다름).

체류기간 바로 아래에 있는 만료일은 비자(사증)의 유효기간을 나타낸다.

비고 Remarks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3. 12. 14.>

사증발급확인서 **VISA GRANT NOTICE**



Visa No. (사증번호): AB0000000000

(출력일시) 2020.00.00. 00:00

I. DETAILS OF	APPLICANT (신청자 정보			
사건 PHOTO (35mm×45mm)	성 Family Name 명 Given Names				
	생년월일 Date of Birth		(yyyy/mm/dd)	성별 Sex	Male / Female
	국적 Nationality				6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만료일 Passport Expiration Date		(yyyy/mm/dd)		
2. 사중 사항 VI	SA DETAILS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체류기간 Period of Stay	(yyyy/mm/dd)	사증 종류 Number of Entrie	s
발급일 Date of Issue	(yyyy/mm/dd)	사증 유효기간 Validity Period of Visa	(yyyy/mm/dd)	발급 기관 Issuing Authority	,

This document confirms that the above applicant's Korean visa application has been approved and that the visa is currently vali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Entry of Aliens) of the Immigration Act. 대한민국 「윤건구라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에 따라 기재된 신청인에 대하여 사증이 발급되었으며 해당 사증이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Minister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 유의사항 NOTICE >

210mm×297mm[백상지(80 g/m') 또는 중질지(80 g/m')]

외국인등록증 읽기







< 외국인등록증 앞면 >

< 영주증 앞면 >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 소신고증 앞면 >

앞면

신분증 명칭

- (한글) 외국인등록증 (영문) RESIDENCE CARD

- (한글) 영주증 (영문) PERMANENT RESIDENT CARD

- (한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문)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외국인등록번호: ○○○○○○○○○○ 형태로 표기

성별: 남자는 M. 여자는 F로 표기

성명: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표기

국가/지역: 국적을 영문으로 표기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체류자격을 표기(결혼이민

자(F-6))

발급기관 :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 영주증 뒷면 >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 소신고증 뒷면 >

뒷면

체류기간

허가일자 :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허가를 한 날짜

만료일자: 체류기간 만료일자

※ 영주자격(F-5)인 경우 '유효기간'이라고 표기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 임

확인 : 허가사무소를 표기하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생략하고 '서울' , '부산' 등으로 표기

(1) 단기체류자(B, C계열 - 최대 90일 이내)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2) 장기체류자 및 영주자격 소지자 :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영주증을 소지한 자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기간 허가일자와 만료일자가 적혀 있으며, 만료일 이전에 체류 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해야만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영주증은 유효기간 내 재발급 필요)

02 외국인등록

(1)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체류 중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부여 또 는 체류자격 변경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을 같이 하게 된다.

(2)구비서류

공통서류

여권(+원본, 사본)

통합신청서(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민원실에 별지 34호 양식 비치)

여권용 사진(규격 3.5cm x 4.5cm)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에 천연색 정면 응시 얼굴 사진

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현금)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자격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꼭 확인할 것)

(3) 결혼이민자

위 서류 외에 한국인 배우자(한국인 남편 혹은 아내)의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 발급

체류지 입증서류

- 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 기간연장 수수료 30,000원
- ※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의 경우 사증 발급 시 결핵검사 제출('20년 4월)
- ※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하여 체류기간 2년 부여

(4) 외국인등록 신청 및 발급

외국인등록 신청 및 (재)발급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신청

외국인등록증 교부방법

외국인등록증 교부 시기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약 3주 가량 소요 되며,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여 교부받거나 또는 택배 서비스(요금선불)를 이용하여 집에서 받을 수 있다.

(5) 외국인등록증 관리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하며, 휴대의무 위반 시 1,000,000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아래 사유가 생긴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낡아서 못 쓰게 된 경우 필요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된 경우

구비서류

여권

통합신청서

컬러사진(3.5cm x 4.5cm) 1매

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외국인등록증 반납: 아래 사유가 생긴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해야 하는 경우	반납시기	제출서류	
완전히 출국할 때	출국할 때 공항만에 서	없음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주민등록을 마친 날 부터 3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원본, 주민등 록증발급 신청확인서(또는 주민등록증), 기본증명서	
사망했을 때	사망을 안 날부터 30 일 이내 (배우자, 부 모, 형제 등)	외국인등록증,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 사실증 명서류	

03 체류기간 연장

(1)대상 및 시기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만료일이 지난 이후 연장신청을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2)체류기간 연장절차

 민원신청
 접수
 심사

 (민원인)
 (출입국공무원)
 (필요시 실태조사)

허가여부허가사항 전산입력 및여권 등 교부(결재)기재(외국인)

(3)구비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 60,000원(결혼이민(F-6)의 경우 30,000원)

결혼이민자가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와 결혼이민자의 체류지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만 필요) 단,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 체류자격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꼭 확인할 것

04 체류자격 변경

(1)대상 및 시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 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단기방문 중 단체관광 등(C-3-2)은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제한된다.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D-2)

한국에서 다른 체류자격(90일 이하 단기비자 소지자, 불법체류자 등 제외)을 가진 외국 인이 한 국인과 결혼하여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구비서류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장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자격변경 수수료 100,000원(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 영주(F-5) 자격변경의 경우 200,000원(영주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05 체류자격 외 활동

(1)대상 및 시기

91일 이상 장기체류(90일 이내 단기사증 소지자는 제외함)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 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학(D-2) 및 어학연수(D-4-1,D-4-7)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 람(별도의 세부 자격요건 있으며 ☎1345 문의)

※ 어학연수생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허용함

종교체류자격(D-6)으로 활동하는 선교사가 동일재단의 산하 기관에서 강의(E-1)를 하고 자 할 경우

결혼이민자(F-6)는 취업에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가 있으며, 별도의 체류자격의 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구비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 120,000원 단, 유학(D-2), 일반연수(D-4)는 수수료 없음

06 재입국 허가

(1)대상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자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지위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등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자

(2)기간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 재입국 최장기간 : 1년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 최장기간 : 2년

(3) 재입국 허가 면제 및 제외 대상

A-1~A-3 및 등록외국인(모든 체류자격)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 입국 허가 면제(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

F-5(영주) 자격 소지자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 면제

(4)구비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수수료 - 단수 : 30,000원, 복수 : 50,000원

(5)재입국 허가기간의 연장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허가기간 내 또는 면제기간 내 입국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간 내에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재입국 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체류자격은 상실된다.

07 외국인의 신고의무 중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내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체류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체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신고사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D-1, D-2, D-4~D-9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 D-10 자격 소지자의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H-2 자격 소지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 그 취업개시사실 H-2 자격 소지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 및 명칭변경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2)구비서류

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변경사항 입증서류(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입증 서류)

알아두세요!

검역이란?(동·식물 검역)

해외 가축 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공항, 항만에서 입국 전 검역을 실시합니다. 입국 시 반입금지 농·축산물을 소지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입국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축산물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만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검역절차

한국에 도착(공항, 항만, 우체국)

입국심사

세관신고서(검역신고) 작성

동물, 식물, 농산물, 축산물 검역 : 검역결과 합격된 경우만 통과됩니다.

세관 검사

입국

동물·축산물 검역

휴대 반입 제한 축산물(휴대한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육류 및 육류가공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소시지, 햄, 육 포, 삶은 고기 등
- ② 유가공품 : 우유, 치즈, 버터 등
- ③ 알 및 알 가공품: 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 등
- ④ 애완동물 사료, 간식류 및 영양제 등

여행자 휴대품 불합격 사례



식물·농산물 검역

휴대 반입 금지 품목

- ① 망고, 바나나, 사과, 배, 오렌지, 라임, 아보카도, 풋콩, 오이, 토마토 등 생과채류
- ② 고구마, 감자, 마 등 땅속채소와 껍데기가 붙은 호두
- ③ 흙 및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있는 곤충, 잡초 종자 등



식물·농산물 휴대 및 우편·탁송 반입 시 유의사항

씨앗(종자), 묘목(접수·삽수 포함), 구근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물검역증명서가 없는 경우 수입 할 수 없습니다(2019. 9월부터 시행)

※ 자세한 검역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4-912-1000 또는 032-740-2661,2077)